

## 14. 「住宅政策」 어떻게 달라지나

자료제공 : 건설교통부

### I. 달라지는 방향

-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주택시장은,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에서 탈피하면서, 시장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
  - 90년이후 매년 60만호이상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주택부족이 크게 완화되고 상당수의 미분양주택이 남아 있으며
  - 91.5이후 집값이 안정되면서 투기가 사라지고, 생활수준 향상으로 주택수요의 다양화, 고급화 추세도 뚜렷해짐
- 이에 따라,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대량 건설·공급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 제도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데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
  - 향후 이같은 현상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
-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제 주택시장의 자율기반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는 만큼,
  - 기본적으로 중산층이상의 주택문제는 시장에서 해결한다는 원칙하에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,
  -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효율화하여 주거안정을 강화하고자 함
- 다만, 수도권 등 주택부족이 아직 해소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, 금융지원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택부족을 조기 해소하고 집값 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함

## 〈향후 주택정책 방향〉

### □ 주택가격 안정기조 유지에 주력

- 주택가격 안정이 서민 주거안정에 핵심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집값 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
  -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 지역에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택지공급 확대에 주력하고, 지방의 미분양주택해소를 통해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
  - 철저한 수요관리를 통해 투기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

### □ 민간의 자율성 제고로 주택시장 기능회복

- 중산층이상의 주택문제는 주택시장 기능에 의해 해결되도록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의 활력을 회복
  - 주택가격, 규모, 건설기준 등 관련규제를 지속 완화
- 규제가 필요한 부문(안전, 위생, 환경보호등)에 대해서는 규제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

### □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강화

-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정부의 기본 역할인 만큼,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
  -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 강화
  - 재개발,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고 최저주거수준 도입

## II. 상반기에 달라진 정책

### 1.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

연초 수도권 일부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에 대응하여 수급의 양측면에서 철저한 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, 투기가능성이 잠재된 수도권지역에 채권입찰제를 확대 실시하고, 지역 우선 분양물량도 축소

## 〈주택 수요관리〉

### □ 투기우려지역 확대지정(1.29 국세청 시행)

- 서울강남, 신도시 등 전국 139개 읍·면·동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특별관리

### □ 투기단속반 편성·운영(2.1-4.30)

- 건교부 및 지자체에 상시 투기단속반을 편성·가동
  - 건교부 : 7개반 28명 (반장 : 주택심의관)
  - 지자체 :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시·군·구 48개반 150명

### □ 아파트 기준시가 조정(5.1 국세청 시행)

- 양도소득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기준시가를 현시세를 반영하여 대폭조정 (전기대비 평균 10.4%인상)

### □ 채권입찰제 확대실시(7.18 주택공급규칙 개정)

-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채권입찰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종전에는 시장·군수만 지정)
- 이에 따라 「용인수지2지구」를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25.7평 초과 중·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채권입찰제 시행

## 〈주택공급 확대〉

### □ 택지개발예정지구 확대 지정(2.28)

- 수도권지역의 8개지구 295만평을 포함하여 총 14개지구 350만평지정
  - 특히 서울수색, 용인동백 등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

### □ 지역주민에 대한 우선공급제도 개선(7.18 주택공급규칙 개정)

- 수도권지역의 20만평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지역우선 공급 물량은 30%로 제한(종전에는 전량을 우선 공급)

- 이에 따라 70%물량이 서울등 수도권 주민에게 공급되어 분양기회를 확대하고 위장 전입 등 편법분양 방지

## 2. 민간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

주택시장 여건이 성숙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격, 규모 등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

### □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(4.26 주택규모별공급비율지침 개정)

- 소득증가, 주택부족 완화 등에 따른 중·대형 주택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주택규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
  - 서울과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은 규제폐지
  - \*서울 : 25.7평이하 75%, 18평 이하 30%이상
  - 경기 과밀억제권역 : 25.7평이하 60%, 18평이하 20%이상

### □ 아파트 분양가 규제완화 확대(6.1 원가연동제 지침개정)

- 95.11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택시장 구조개선 시책의 일환으로 시장여건이 성숙된 지역에 대해 분양가규제를 폐지
  - 수도권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규제를 전면 폐지
  - 수도권지역에서도 「공공택지 및 공공자금 지원없이 80% 공정후 분양하는 경우」 및 철골조 아파트에 대해서는 규제폐지
  - ※서민계층을 위해 건설되는 국민주택(18평이하)은 계속 규제

### □ 수도권이외 지역에 대한 재당첨제한 폐지(7.18 주택공급규칙 개정)

- 종전에는 국민주택은 10년, 민영주택은 5년간의 재당첨이 제한되어 있으나
- 수도권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하여 주택의 선택기회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요확보를 통해 원활한 주택공급 도모

□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완화(4.1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)

-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여 사업의 자율성 제고
  - 종전에는 임대주택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였으나, 이를 폐지하여 자율 선정 가능
  - 종전에는 분양전환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하였으나, 이를 폐지하여 자율 선정 가능
  - 종전에는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시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(등기이전)하여야 가능했으나, 매입계약서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함

### 3.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

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택지 및 자금지원을 늘리고,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, 영세민과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

#### 〈임대주택 공급확대〉

□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(1.1 기금운용계획 변경)

- 50년임대 : 호당 2,100만원→2,300만원
- 5년 임대 : 호당 1,500~1,700만원→1,800~2,000만원
- 사원임대 : 호당 1,800만원→2,000만원

□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확대(2.1 택지개발 업무지침 개정)

- 공공택지의 20%이상을 임대주택 용지로 우선 공급
- 임대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을 10%p 인하
  - 조성원가의 80~90%→70~80%

## 〈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성화〉(97말 동법 시행령개정 추진)

### □ 지구내 공동주택 건설 확대

- 지구내 토지·건물소유자 및 세입자수 만큼 공동주택을 건설토록 제한하던 것을,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설할 수 있도록 완화

### □ 지구지정 대상면적의 확대

- 600평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하던 것을 그 이하 규모라도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가능토록 함

### □ 공동주택 상한규모를 상향 조정

- 분양주택 : 18평이하→25.7평이하까지 허용
- 임대주택 : 12평이하→18평이하까지 허용

### □ 공공시설의 정비계획에 공용주차장 설치근거를 명기하여 주차장 설치 확대

### □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지구내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특별공급(7.18 주택공급규칙 개정)

## 〈영세민과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〉

### □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확대(1.18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)

- 용자금액 인상 : 세대당 500만원→750만원
- 용자대상자 확대
  - 서울 : 전세금 2,500만원이하('96과 동일)
  - 광역시 : 2,000만원 이하→2,500만원 이하
  - 지방 : 1,500만원이하→2,000만원 이하

### □ 근로자 주택자금 지원확대(6.3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)

- 총 지원규모 확대 : 1,000억원→1,500억원

-주택구입자금 세대당 지원액 인상 : 1,400만원→1,600만원

### Ⅲ. 하반기에 달라질 정책

#### 1.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

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중장기 주택건설계획을 수립·추진하는 한편, 하반기에도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서울의 집값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는 재건축제도 개선방안도 마련

##### □ 중기 주택정책 수립

- 신경제 5개년계획이 금년으로 끝남에 따라, 향후 5년간 ('98~2002) 주택정책이 나아가 할 기본방향을 수립
  - 수도권의 중기 주택수급계획 및 시장여건 변화에 상응한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

##### □ 택지개발 예정지구 확대 지정

- 상반기에 295만평을 지정한데 이어 하반기중에도 택지지구를 확대 지정하여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충

##### □ 재건축 제도 개선

- 재건축과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기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제도 개선추진
  - ※ 현재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재건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므로, 그 결과를 보아가면서 구체방안 마련

## 2. 민간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

주택분야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된 5건의 과제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, 추가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

### □ 「사전결정」 제도개선(7월 주택의 건설·공급 및 관리규정 개정)

- 현재 사전결정이 강행규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나
- 이를 법취지에 맞게 임의적 절차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사전결정 및 중복심의를 방지함으로써 원활한 주택사업 도모

### □ 공공택지 공급방법 개선(7월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)

- 현재는 25.7평이하 용지만 분양에서 임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나
- 앞으로는 25.7평초과 규모 용지도 분양에서 임대로 변경을 허용하여 중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

### □ 간선시설 설치방법 개선(98 주축법 및 원가연동제지침 개정)

- 현재는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로부터 200미터가 넘는 도로·상·하수도를 설치하고도 비용회수가 불가능했으나
- 앞으로는 간선시설은 사업주체가 일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함

### □ 공동주택의 부대·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완화(97년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)

- 시장 여건변화로 불필요하게 된 시설기준을 폐지하고 과도한 기준은 완화하는 등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

### □ 주택건설 감리제도 개선

- 감리자 지정시 가격경쟁 방식 도입
- PQ를 통과한 3개의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감리비입찰제 실시

-감리비 산정방법을 일원화 : 총공사비의 2.5%

### 3.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

저소득층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금융 확충방안을 강구하고, 주택은행 민영화에 대비한 금융체계 개편방안 추진

#### □ 주택금융 확충방안 강구

-금융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등 장기주택금융 방식의 도입을 본격 추진

#### □ 주택금융체계 개선

-주택은행 민영화에 대비하여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방법 등 공공 주택금융 체계 개편방안 추진